

실내용 바닥재(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) 안전기준 개정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3. 9. 1.)

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(실내용 바닥재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. 개정 취지

-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- 폐지된 표준 대체(KSM3507을 KSM3802로 대체)
- 비닐바닥타일의 제품분류 일원화(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1)
-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, 연질 구분 삭제
- 비닐바닥시트 및 비닐바닥타일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(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5, 표6)

3. 붙임자료

- ‘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(실내용 바닥재)’ 개정 전문을 아래 경로*에서 검색
*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ats.go.kr>) > 정책 > 제품안전 > 안전기준열람 > 생활용품 안전기준

4. 시행일

- 2023년 9월 1일